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4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경영, 김수규, 김제리,
김평남, 문장길, 봉양순,
성흠제, 이준형, 장상기,
전석기, 최웅식, 홍성룡,
황규복, 황인구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-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, 자연환경보전 및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6조)
- 나. 자연환경보전단체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6조)
- 다.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8조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연환경보전법」 및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법 제6조제4항”을 “시장은 법 제6조제4항”으로, “수립하되, 시민·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”을 “수립하고 이를 시행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시민·관계전문가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듣고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8조 및 「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(이하 “녹색서울시민위원회”라 한다)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

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자연환경·생태계서비스(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)의 현황, 전망 및 유지·증진에 관한 사항
2.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
3. 생태·경관보전지역의 지정·관리에 관한 사항
4.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
5.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·활성화에 관한 사항
6.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

7.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

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·평가하고,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미리 「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녹색서울시민위원회(이하 “녹색서울시민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미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,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

4.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·홍보

제38조의2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표창)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4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8조(생태·경관보전지역의 지정·변경절차 등) ① (생략)

② 법 제24조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「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녹색서울시민위원회(이하

항

- 2.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
- 3. 생태·경관보전지역의 지정·관리에 관한 사항
- 4.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
- 5.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·활성화에 관한 사항
- 6.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
- 7.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

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을 2년마다 분석·평가하고,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8조(생태·경관보전지역의 지정·변경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미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-----

“녹색서울시민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③ (생략)

제36조(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) ①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,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

4.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·홍보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8조의2(표창)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4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
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